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준대규모점포에서 소상공인, 중소유통업자의
프랜차이즈형 체인점포 제외〉

■ 이종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140호)

2024. 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종배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4. 8. 23.
3. 회 부 일 : 2024. 8.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복수의 출점 제한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준대규모점포 중 프랜차이즈형태로 운영되는 가맹점은 사실상 자영업 및 중소유통, 소상공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 등에 적용되는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어 더 이상 불합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에 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프랜차이즈형태로 운영되는 준대규모점포 가맹점 중 본부 투자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사업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현행법상의 프랜차이즈형 준대규모점 규제는 적절하지 않고, 법률 간의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있음.

이에 사실상 자영업자 및 중소유통업자,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준대규

모점포는 현행법상 규제대상에서 제외코자 함.

주요내용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중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등이 점포 개업에 드는 임차료, 공사비 및 설비비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총 비용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하도록 개정함(안 제2조제4호라 목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대기업 또는 대규모점포 경영자가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중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중소유통기업이 운영하는 점포는 준대규모점포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2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준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 -----.
가.·나. (생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가목 및 나목의 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제6호가목에 따른 직영점형 <u>체인사업</u>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u>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u>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다. ----- ----- ----- <u>체인사업의</u> ----- -----
<u><신설></u>	<u>라. 가목 및 나목의 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제6호나목에 따른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로서 점포 개업에 드는 임차료, 공사비 및 설비비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u>

	정하는 총 비용의 100분의 50 을 초과하여 부담하는 점포
5. ~ 16. (생략)	5. ~ 16.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대기업 또는 대규모점포의 경영자가 대규모점포의 매장면적 기준(3,000m²)미만의 점포를 개설하여 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준대규모점포의 정의를 규정하고¹⁾ 입지제한 및 영업제한 등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음²⁾.

현행 준대규모점포의 정의에는 대기업 또는 대규모점포의 경영자가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³⁾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가 포함되는데, 이는

1) 준대규모점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슈퍼마켓(47121)과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9)을 영위하는 점포로서, 다음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와 같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준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직영하는 점포**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다. **가목 및 나목의 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제6호가목에 따른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2)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③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시간 제한

2. 의무휴업일 지정

체인본부가 개별 점포의 상호, 판매방법, 매장운영 및 광고방법 등을 결정하고 가맹점으로 하여금 그 결정과 지도에 따라 운영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대기업 또는 대규모점포의 프랜차이즈형 가맹점 운영 확대가 지역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프랜차이즈형 체인점포의 경우에도 해당 점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체가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입지제한 및 영업제한 등의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개정안은 대기업 또는 대규모점포 경영자가 개설비용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부담한 점포만을 준대규모점포에 포함시키고자 함(안 제2조 제4호).

중소유통업체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대·중소 유통업체의 상생협력을 도모하는 것이 현행법의 취지임을 고려할 때, 프랜차이즈형 체인점포에 일괄적인 규제를 적용하기보다 개정안과 같이 그 실질적인 운영주체를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체인사업”이란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를 직영(자기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매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원재료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나.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

독자적인 상품 또는 판매·경영 기법을 개발한 체인본부가 상호·판매방법·매장운영 및 광고방법 등을 결정하고, 가맹점으로 하여금 그 결정과 지도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고려하여 규제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보여짐.

유사한 입법례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형 체인점포가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에는 사업조정 대상이 되도록 하되, 해당 점포 개업에 드는 임차료, 공사비 및 설비비 등 총비용의 100분의 51 이상을 대기업이 부담하는 점포로 사업조정 대상을 한정하고 있음.⁴⁾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정안과 같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점포는 준대규모점포 정의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사업조정 신청 등) ① 중소기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조정 신청일은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 본다. (단서 생략)

1. 대기업

2. 대기업이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를 직영(자기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매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 아래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원재료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이에 속한 체인점포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점포

가. (생략)

나.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

독자적인 상품 또는 판매·경영 기법을 개발한 체인본부가 상호·판매방법·매장운영 및 광고방법 등을 결정하고, 가맹점으로 하여금 그 결정과 지도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3. (생략)

②~⑧ (생략)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사업조정 대상 체인점포) 법 제32조 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점포”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2007년 12월 28일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슈퍼마켓(47121)과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9)을 영위하는 점포 중에서 해당 점포 개업에 드는 임차료, 공사비 및 설비비 등 총비용의 100분의 51 이상을 대기업이 부담하는 점포를 말한다.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⁵⁾

다만, 중소벤처기업부는 직영점을 제외한 가맹사업자의 연간 매출액을 고려할 때 골목상권의 중소유통 업체와 같은 약자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⁶⁾ 점포 개점 이후 지분구조나 경영방법이 변경되는 등 본사의 개점비용 부담 비중을 기준으로 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그 외에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준대규모점포의 범위를 축소할 경우 슈퍼마켓 생존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461

5) 다만, 점포개업에 드는 총비용의 산출방식은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함께 제시하였음.

6) GS더프래시 정보공개서 기준, 2022년 가맹점사업자 연간 평균매출액은 24.8억원(상한 36.5억원, 하한 16.2억원)이나, 국세통계포털의 2022년도 슈퍼마켓 평균 매출액은 7.2억원에 불과하다는 의견임.